

서울남부지방법원 2020. 1. 9 선고 2019가단7567 판결 [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및 구상금청구]

전 문

원고A 주식회사

피고1. B

2. C

3. D

4. E

5. F

6. G

피고 3 내지 6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C

변론 종결2019. 12. 12.

판결 선고2020. 1. 9.

주 문

1. 피고 B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9. 6. 15.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명의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고,

2. 원고에게

가. 피고 B는 3,239,2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. 6. 16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,

나.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가.항의 돈 중 피고 C는 883,440원, 피고 D, E, F, G은 각 588,96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. 8. 29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4.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가. 피고 B에 대하여

원고는 위 피고의 관리비(제세공과금 등 포함) 연체를 이유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위 자동차의 소유권명의이전등록절차 인수와 연체관리비(2019. 4. 8. 기준) 등을 청구한다.

나. 피고 C, D, E, F, G에 대하여

망 H은 피고 B의 위 가.항 관리비 등 채무를 연대보증한 후 2018. 3. 24. 사망하였는바, 처인 피고 C가 3/11, 자녀인 피고 D, E, F, G이 각 2/11의 지분 비율로 망인을 상속하였다. 따라서 피고 C, D, E, F, G은 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연체관리비 중 각자의 상속분에 따른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(자백간주 판결)

판사윤상도

별지